

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19269 판결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192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328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 선고 2016. 11. 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328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 부분 257m² 지상에 있는 C상 석불, 재단, D 좌불상, 재단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 부분 지상 블록조 철파이프 단층창고 9m²를 각 철거하고, 나. 위 선내 (ㄱ) 부분 257m² 및 (ㄴ) 부분 9m²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은 대구시가 그 중 45/2,190 지분, E이 164/2,190 지분, F, G가 각 163.5/2,190 지분, H가 240/2,190지분 및 164/2,190 지분(단, 위 양 지분의 소유자인 H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250/2,190 지분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동구 I 지상에는 J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피고는 승려로서 위 J를 창건하여 현재 J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J 부지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m² 지상에는

블록조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그 윗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7m² 지상에는 석불, 재단, D 좌불상, 재단(이하 '이 사건 석불 등'이라고 하고, 이 사건 창고와 석불 등의 대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와 석불 등이 존재하여 피고가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3. 철거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거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자진하여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을 철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소송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토지인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김일수

판사신미진

별지